



인도네시아 Tax Info 2021 년 10 월호

인니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개정 초안

2021 년 10 월 7 일 인니국회(DPR)는 세법개정초안(이하 RUU HPP)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은 세제 개혁을 기반으로 국가 예산 적자 축소 및 국세 대비 GDP 비율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장려하고 국가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전략의 일환임.

RUU HPP 는 다음을 포함하는 여러 재정법과 규정을 조화시킨다.

- 소득세법;
- 부가가치세(VAT) 법;
- 국세기본법; 및
- 소비세법.

RUU HPP 는 또한 새로운 탄소세 및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Program Pengungkapan Sukarela (VDP)).

본 자료는 법률 초안(225 페이지)의 2021 년 9 월 29 일 버전을 기반으로 RUU HPP 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개괄적 분석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정부에서 곧 발표할 최종 법률을 참조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결재 대기중에 있으며 일부 수정 사항이 있을 수 있음.

In this issue:

1. [Draft Law on Harmonization of Tax Regulations passed by the DPR](#)

Customs Focus:

2. [Imposition of import duty tariffs based on the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between Indonesia and th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countries](#)

소득세법

RUU HPP 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소득세법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조항	현행 소득세법	RUU HPP																						
개정된 개인소득세율	<p>개인 소득세 (IIT)</p>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 소득</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최대 IDR 5 천만</td> <td>5%</td> </tr> <tr> <td>IDR 5 천만 초과 ~ IDR 2 억 5 천만 미만</td> <td>15%</td> </tr> <tr> <td>IDR 2 억 5 천만 초과 ~ IDR 5 억 미만</td> <td>25%</td> </tr> <tr> <td>IDR 5 억 이상</td> <td>30%</td> </tr> </tbody> </table> <p>법인소득세 (CIT)</p> <p>2020 년 5 월 16 일에 발행된 2020 년 법률 번호 2(UU-2)는 2022 회계연도부터 20%의 법인세율을 규정하고 있다.</p>	과세 소득	세율	최대 IDR 5 천만	5%	IDR 5 천만 초과 ~ IDR 2 억 5 천만 미만	15%	IDR 2 억 5 천만 초과 ~ IDR 5 억 미만	25%	IDR 5 억 이상	30%	<p>IIT</p>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 소득</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최대 IDR 6 천만</td> <td>5%</td> </tr> <tr> <td>IDR 6 천만 초과 ~ IDR 2 억 5 천만 미만</td> <td>15%</td> </tr> <tr> <td>IDR 2 억 5 천만 초과 ~ IDR 5 억 미만</td> <td>25%</td> </tr> <tr> <td>IDR 5 억 초과 ~ IDR 50 억 미만</td> <td>30%</td> </tr> <tr> <td>IDR 50 억 이상</td> <td>35%</td> </tr> </tbody> </table> <p>CIT</p> <p>정부는 RUU HPP 를 통해 2022 회계연도 및 그 이후 연도에 대해 법인세율을 22% (2021 회계연도 기준)로 유지할 계획이다.</p>	과세 소득	세율	최대 IDR 6 천만	5%	IDR 6 천만 초과 ~ IDR 2 억 5 천만 미만	15%	IDR 2 억 5 천만 초과 ~ IDR 5 억 미만	25%	IDR 5 억 초과 ~ IDR 50 억 미만	30%	IDR 50 억 이상	35%
과세 소득	세율																							
최대 IDR 5 천만	5%																							
IDR 5 천만 초과 ~ IDR 2 억 5 천만 미만	15%																							
IDR 2 억 5 천만 초과 ~ IDR 5 억 미만	25%																							
IDR 5 억 이상	30%																							
과세 소득	세율																							
최대 IDR 6 천만	5%																							
IDR 6 천만 초과 ~ IDR 2 억 5 천만 미만	15%																							
IDR 2 억 5 천만 초과 ~ IDR 5 억 미만	25%																							
IDR 5 억 초과 ~ IDR 50 억 미만	30%																							
IDR 50 억 이상	35%																							
현물급여(benefits-in-kind (BIK)) 재조정	<p>원칙적으로 BIK 는 고용주에게는 손금불산입되며 BIK 를 받는 직원에게는 비과세됨.</p> <p>고용주에게는 손금산입되고 직원에게는 비과세되는 BIK 는 아래 항목으로 제한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직원에게 제공되는 식사; • 특정 적격 외딴 지역에서 제공되는 복리 후생비; 및 • 업무 수행에 필요한 BIK. 	<p>원칙적으로 소득의 획득, 징수 또는 유지 활동과 관련된 BIK 는 고용주에게 손금산입되며 직원에게는 과세된다.</p> <p>직원에게 비과세되는 BIK 는 아래 항목으로 제한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직원에게 제공되는 음식과 음료; • 특정 외딴 지역의 BIK; • 업무 수행에 필요한 BIK; • 국가 예산, 주정부 예산 또는 마을 예산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특정 BIK; 및 • 특정 제한 사항이 적용된 특정 BIK 																						
은행 및 금융사 부실채권 손금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의 부실채권 손금 계산은 재무부장관(MoF)이 정한 공식과 비율에 의거 1%~100% 임. • 금융사의 부실채권 손금 계산은 재무부장관(MoF)이 정한 공식과 비율에 의거 2.5%~5% 임. 	<p>대손충당금중 손금산입 계산은 현행 재무 회계 기준(Standar Akuntansi Keuangan)에 준하며 인니 금융감독원(Otoritas Jasa Keuangan)과 협의를 통해 특정 제한을 둠.</p>																						
차입 비용의 손금산입 결정 방법	<p>재무부는 소득세 목적상 부채비율(DER) 결정권이 있음.</p> <p>현재 조세 목적 부채비율은 4:1 이며 이 비율을 초과하는 차입금 이자 비용은 손금불산입된다.</p>	<p>재무부장관은 부채비율, EBITDA (이자비용, 세금,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차감전 이익) 대비 차입 비용 또는 기타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에 기반하여 차입비용에 대한 손금산입 제한을 정할 권한이 있다.</p>																						

조항	현행 소득세법	RUU HPP
<p>특정 고정 자산의 감가상각 및 상각 내용 연수 결정 유연성 제고</p>	<p>내용연수가 20 년 이상인 영구건축물은 20 년간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감가상각해야 함.</p> <p>실제로 내용연수가 20 년 이상인 무형자산은 현행 소득세법에서 허용되는 내용연수 중 가장 긴 기간인 20 년 동안 상각한다.</p>	<p>내용연수가 20 년 이상인 영구건축물은 다음 기간 동안 동일한 월별 금액으로 감가상각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년; 또는 • 회계목적상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내용 연수. <p>RUU HPP 에 따라 내용 연수가 20 년 이상인 무형 자산은 다음 기간 동안 정액법 또는 이중체감법을 사용하여 상각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년; 또는 • 회계 목적상 상각 연수
<p>중소기업(SME)으로 사업을 하는 개인 납세자에 대한 조세 혜택</p>	<p>중소기업인 개인 납세자에 대한 최종 소득세 제도는 현행 소득세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대신, 2018 년 정부 규정 번호 23(PP-23)에 의거 해당 SME 납세자(연간 매출 최대 IDR 48 억)의 모든 소득에 대해 0.5%의 최종 소득세가 적용된다.</p> <p>최종 소득세 제도는 특정 회계 연도에만 적용되며 그 기간 후 중소기업인 개인 납세자는 일반 소득세 제도로 복귀해야 한다.</p>	<p>RUU HPP 는 중소기업인 개인 납세자를 위한 최종 소득세 제도를 규정한다.</p> <p>또한 RUU HPP 는 중소기업인 개인 납세자의 총수입 중 처음 IDR 5 억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며 IDR 5 억을 초과하는 총수입에 대해 0.5%의 최종 소득세를 부과한다.</p> <p>한계 값 IDR 5 억 DPR 과 협의 후 재무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p>

상기 내용외 RUU HPP 는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을 제안한다:

- 개인 납세자에 대한 연간 소득공제(penghasilan tidak kena pajak (PTKP))액은 재무부 장관령 번호 101/PMK.010/2016 에 명시된 최신 PTKP 금액을 사용하여 업데이트된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공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 인하는 UU-2 변경에 따라 기존 5%에서 3%로 조정된다.
- 특수관계자가 관련된 거래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탈세로 간주된다.
 - a. 소득 과소 계상;
 - b. 비용 과대 계상;
 - c. 동일 산업의 다른 비교 가능한 납세자 대비 낮은 사업 이익을 보고; 또는
 - d. 5 년간 영업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영업손실을 신고하는 경우.
 c 와 d 와 관련하여 벤치마킹을 통해 납부할 세액을 결정할 수 있음.
- 정상가격 거래를 결정하는 새로운 방법이 허용됨. (즉, 비교가능 제 3 자 거래방법, 유무형 자산평가 및 사업평가)
- 또한 RUU HPP 는 이전 가격 조정으로 인한 불일치가 현행 소득세법 및 규정에 따라 과세 배당금으로 간주될 것임을 확인한다.
- 다른 조세관할과의 재정 관련 협력에 대한 권한을 이중과세 방지 및 탈세 방지, 국가 간 이윤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BEPS), 정보 교환, 세금 징수 지원 및 기타 조세협력과 관련된 양자 및 다자 협력을 포함하여 확대한다.

의견

- 연간 소득이 IDR 50 억 이상인 개인 납세자의 납세 의무 증가
- UU-2 에 포함된 법인세 인하가 무효가 되므로 변경의 영향을 받는 법인 납세자는 기존 22% 법인세율을 사용하여 그에 따른 재무 예측을 업데이트해야 함.
- BIK 가 고용주에게는 손금산입에 포함되고 직원에게는 과세 대상이 됨으로 인해 조세 부담이 고용주에서 BIK 를 받는 직원에게 이전됨.
- 대체적 최소 세금 및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 규정(GAAR)과 같은 이전 버전의 법률 초안(Rancangan Undang-undang tentang Perubahan Kelima Undang-undang Nomor 6 Tahun 1983 tentang Ketentuan Umum dan Tata Cara Perpajakan (RUU KUP))에 포함된 몇 가지 조항은 더 이상 RUU HPP 에 규정되지 않음.
- 현행 소득세법상 시행령은 대부분 재무부 장관령의 형태로 되어 있다. RUU HPP 에 따라 일부 시행령이 정부 규정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딜로이트 인도네시아는 RUU HPP 공표 이후 다수의 신규 시행령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신규 정부령 은 공표된 RUU HPP 와 일치하도록 현재 MoF 규정을 대체할 것임.

부가가치세

RUU HPP 는 다음과 같은 주요 VAT 변경을 제안한다:

조항	현행 부가가치세법	RUU HPP
부가가치세율 변동	표준 부가가치세율은 10%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년 4 월 1 일부터 표준 부가가치세율이 11%로 인상된다; 또한 • 표준 부가가치세율은 늦어도 2025 년 1 월 1 일까지 12%로 인상된다.
부가가치세 면제 및 혜택 변동	<p>4 개의 상품 그룹과 17 개의 서비스 그룹을 제외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는 부가세가 적용된다.</p> <p>부가세가 적용되는 특정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배송에는 부가세 면제 또는 부가세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p>	<p>다음은 제외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는 부가세가 적용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지방세가 과세되는 품목 (예: 레스토랑이나 호텔 또는 케이터링에서 제공되는 음식,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호텔 서비스 및 주차 서비스) • 돈, 골드바(인도네시아의 국가 금 보유고를 나타냄) 및 증권 • 종교 서비스; 또한 • 다른 당사자가 제공할 수 없는 정부 행정 서비스. <p>현재 VAT 범위를 벗어난 다음 상품 및 서비스는 과세 대상이 되지만 VAT 면제 혜택(PPN dibebaskan)이 주어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농산물; • 의료/건강 서비스; • 사회 서비스; • 금융 서비스;

조항	현행 부가가치세법	RUU H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 서비스; • 교육 서비스; • 육지와 수상에서의 특정 대중 교통 서비스, 그리고 특정 국내 항공 운송 서비스; 및 • 노동 서비스. 부가가치세 비과세 혜택이 더 선별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최종 부가세 제도 도입	해당 없음	다음 범주에 속하는 부가세 납세사업자는 매입 부가세 공제 메커니즘을 대체하기 위해 최종 부가세 메커니즘의 적용을 받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된 최대 금액까지의 총 수익이 있어야 함. • 특정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함; 및/또는 • 특정 과세 대상 상품 및/또는 과세 대상 서비스를 제공함 위의 기준은 재무부 장관이 추가로 규제한다.

RUU HPP 는 부가세 관련 다음 변경 사항을 제안함:

- 특별 부가세 과세 기준이 적용되는 과세상품 및/또는 과세서비스 구매와 관련된 매입부가세 공제.
- 세단 차량 및 스테이션 왜건의 구매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매입부가세 공제.
- RUU HPP 는 부가세 면제 또는 부가세 비과세 혜택에 해당하는 현재 상품 목록(예: 국가 상수도, 육상 및 항공 운송 함대, 정수, 및 전기)의 일부 항목을 취소함. 단, 변경 내용은 아직 미정 상태임.

의견

- 부가세율 인상으로 인한 상품/용역의 가격 인상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예상됨.
- 부가세 면제 혜택 폐지를 제안한 RUU KUP 와 달리 RUU HPP 는 면제를 유지하지만 면제 혜택 대상 품목을 제한하려고 함.
- 현재 특정 과세 대상 상품 및/또는 과세 서비스에 적용되는 부가세 면제 또는 부가세 비과세 혜택이 취소될 수 있음. 상품 및 서비스가 다른 부가세 혜택 대상이될지 또는 단순히 과세 대상 품목이 될지는 아직 미정임.

국세기본법

RUU HPP 는 조세 행정 및 제재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 사항을 제안한다.

조항	현행 국세기본법	RUU HPP
주민등록번호(Nomo Induk Kependudukan) 를 납세자번호로 사용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NPWP 를 등록해야 한다. NPWP 는 NIK 와 별개임.	NIK 는 개인 납세자의 NPWP 를 대체한다. 내무부의 데이터는 국세청(DGT) 데이터와 통합된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 및 재무부 장관령에 의해 규제된다.
글로벌 세금 징수 지원	해당 없음	DGT 는 다른 국가의 세금 징수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단,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관련 국제 협정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조치는 호혜적이어야 함. 세금 징수 절차는 인도네시아 세금 징수 절차를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상대국의 징수절차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예를 들어, 상대국의 세금 징수 절차가 압류영장(즉, 미지급 납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산 압류를 승인하는 영장)과 상당하는 수준에만 적용된다면 인도네시아는 그 지점까지만 조세징수를 지원함.
Reduction of various tax penalties 가산세 감면	<p><u>과소납부 세액 확정 통지서(Surat Ketetapan Pajak Kurang Bayar (SKPKB))</u></p> <p>SKPKB 의 경우 상황에 따라 미지급 금액에 기준금리(Suku Bunga Acuan (SBA))에 15%를 12 개월로 나누어 최대 24 개월 동안 인상된 금액을 더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는 경우에 따라 50% 또는 10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p> <p><u>이의신청</u></p> <p>이의 신청이 거부되거나 부분적으로 승인되면 50%의 추가 가산세가 부과된다.</p> <p><u>행정소송</u></p> <p>소송 신청이 거부되거나 부분적으로 승인되면 100%의 추가 가산세가 부과된다.</p>	<p><u>SKPKB</u></p> <p>SKPKB 의 경우 상황에 따라 미지급 금액에 기준금리 15% 또는 20%를 12 개월로 나누어 최대 24 개월 동안 인상된 금액을 더한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는 경우에 따라 75%의 추가 가산세 부과된다.</p> <p><u>이의신청</u></p> <p>가산세는 30%로 감면된다.</p> <p><u>행정소송</u></p> <p>가산세는 60%로 감면된다.</p> <p>행정소송 신청을 목적으로 납세자가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Surat Keputusan Keberatan) 발행 근거를 DGT 에 요청할 경우 RUU HPP 는 DGT 가 해당 정보 요청에 1 개월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음.</p> <p><u>대법원 재심청구</u></p> <p>대법원 재심 결과 납부할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재심 신청전에 정산된 세금 대비 추가 금액에 대해 6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p>

조항	현행 국세기본법	RUU HPP
DGT 가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 납세자가 자진 신고한 시점	납세자는 DGT 가 세액 확정 통지서(Surat Ketetapan Pajak (SKP))를 발행하기 전에 부실신고에 대한 자진신고를 할 수 있다.	납세자는 DGT 가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 통지(Surat Pemberitahuan Hasil Pemeriksaan (SPHP))를 전달하기 전에 부실신고에 대한 자진신고를 할 수 있다. 자진신고시 세무조사는 중단될 수 있다.
상호 합의 절차(MAP)에 대한 확실성 증대	DGT 의 현재 관행은 조세 법원의 판결시 MAP 절차를 중단하는 것임.	MAP 절차는 이의신청, 행정소송 또는 세액확정통지서(SKP) 오류 취소 또는 감소요청과 함께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다. 행정소송 판결 또는 대법원 재심청구 판결이 내려지면 DGT 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 법원이 판결한 문제가 MAP 에서 협상된 문제가 아닌 경우 MAP 협상을 계속함; 또는 • 조세 법원이 판결한 문제가 MAP 에서 협상된 문제와 동일한 경우 판결을 MAP 협상의 근거로 사용하거나 MAP 협상 절차를 중단함.
소득세, 부가가치세, 전자상거래세에 대한 제 3 원천징수자 지정	해당 없음	재무부 장관은 세금을 원천 징수하는 거래에 직접 관여하거나 거래를 촉진하는 국내 당사자 또는 외국 당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원천징수자가 전자 시스템 주관자인 경우 원천징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정보통신부는 전자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할 수 있다. 세액 확정, 징수, 법적 조치 및 가산세 부과에 관한 조항은 재무부 장관이 세금 원천 징수자로 지정한 외국 당사자에게로 확대될 수 있다.
교정에 초점을 맞춘 조세범죄 관련 법집행	<p>현재 세무 조사관의 권한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를 검색, 수집, 검토 및 압수함 • 조세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고 수집함; 또한 •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함 <p>그러나 위 권한은 재산 몰수를 포함하지 않는다.</p> <p>조세범죄 조사를 받고 있는 납세자가 조세범죄조사를 중단한 납세자의 정산된 세금 및 가산세로 부과되는 추가 가산세는 과소납부세액의 3 배이다.</p>	<p>세무 조사관에게 부여된 권한은 조세 범죄자의 자산을 차단하거나 몰수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확장된다. 몰수될 수 있는 자산은 납세자, 담세자 및 기타 당사자가 소유한 자산이 포함된다 (즉, 조세 범죄와 관련하여 지시를 제공하거나 조세 범죄에 참여하거나 관련 조언을 제공하거나 조세 범죄를 지원하는 당사자). 자산을 몰수하려면 지방 법원의 승인이 필요함.</p> <p>조세범죄조사로 인한 가산세와 납세자의 세금 정산으로 인한 가산세액은 상황에 따라 미납세액의 1 배에서 4 배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사건이 법원에 도달하고 세금과 적절한 가산세가 정산된 경우에는 징역형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세금과 가산세가 정산되지 않은 경우 가산세와 징역형을 모두 부과할 수 있다.</p> <p>특정 상황시 가산세를 지불해야 하고 징역형으로 대체될 수 없다. 조세범죄가 가산세를 기한까지 정산하지 않으면 범인의 자산을 압류해 정산을 위해 경매에 부칠 수 있다.</p>

조항	현행 국세기본법	RUU HPP
		압수한 자산이 가산세를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대신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또한 RUU HPP 는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을 제안한다:

- DGT 는 납세를 연기하거나 분납세 승인을 받은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벌금고지서를 발행할 수 있다.
- 납세자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당사자는 몇 개 예외를 제외하고 일정 수준의 과세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은 재무부 장관의 교육, 인증 또는 훈련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의견

- 특정 연령에 도달한 인니 거주자는 납세자 기준을 반드시 충족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NIK 가 제공된다. NIK 를 NPWP 로 사용하는 도입은 세부 시행 지침에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중에게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음.
- 글로벌 세금 징수 지원 도입에 따라 DGT 는 해외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납세자로부터 납부할 세금을 징수하고 유사한 징수 활동을 하는 다른 (지정된) 관할 국가 세무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다.
- 행정 제재가 완화되면 납세자의 현금 흐름 부담이 감소된다.
- 시장 및 P2P(Peer-to-Peer) 대출 플랫폼 제공업체와 같은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납세자는 세금 원천징수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납세자는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징수 구현을 조사하여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소비세

- RUU HPP 는 e-cigarettes 에 대한 소비세를 도입한다.
- 정부는 제안서를 DPR 에 제출한 후 소비세 대상 상품 목록에 항목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권한이 있으며, 이는 국가 예산 초안을 작성하는 동안 논의되고 결정된다.

의견

정부는 소비세 대상 상품의 결정에 대해 더 큰 통제력과 유연성을 갖게 될 것이다.

탄소세

인니 정부는 2030 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9%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해당 목표 달성에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므로 정부는 수입을 늘리고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RUU HPP 에 탄소세 도입을 제안함. 탄소세는 연료를 태울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정의됨.

정부는 탄소세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연도	단계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UU HPP 의 탄소세 도입 • 탄소경제적 가치 대통령령 확정 • 탄소세 및 탄소시장/거래소에 대한 기술적 메커니즘 개발 • 이산화탄소 환산 킬로그램당 IDR 30(IDR 30/kg CO₂e)의 평균 가격으로 발전 부문의 탄소 거래 시범 운영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광물자원부(MEMR)는 석탄화력발전부문 상한선 결정 • 탄소세(상한선 및 세금)는 2022 년 4 월 1 일까지 IDR 30/kg CO₂e 의 요금이 부과되는 석탄 화력 발전소로 제한됨 • 사용되는 상한선(배출 상한선)은 발전 탄소 거래 파일럿에 적용되는 상한선이 될 것임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시장/거래소를 통한 탄소거래 본격화 • 부문별 대비태세에 따라 탄소세 타 부문으로 점진적 확대 • 다른 부문의 탄소세 절차(상한선 및 세금) 규제 시행

탄소세 과세 대상 납세자는 탄소를 함유하거나 탄소 배출을 생산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탄소세 과세 대상 품목은 탄소를 함유한 상품의 구매 또는 특정 기간 내에 일정량의 탄소를 배출하는 활동이다. RUU HPP 는 IDR 30/kg CO₂e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단위의 가장 낮은 탄소세율을 제공한다.

탄소세 납부기한은:

- 탄소를 함유한 상품을 구매한 시점;
- 활동으로 인해 일정량의 탄소 배출이 발생하는 역년 말; 또는
- 정부 규정에 따라 다른 지정된 시점

탄소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무부장관 및 정부 규정에 의해 규제된다.

의견

- 탄소세는 상당한 양의 탄소를 배출하는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 (석탄 화력 발전소, 운송, 농업 등).
- 2022 년 4 월부터 석탄 화력 발전소에 탄소세가 시행되면 국영전력회사와 독립자영전력생산자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최종 사용자에게 발전 비용과 전기 가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영향의 크기는 MEMR 에 의해 결정되는 배출 상한선에 따라 달라진다.
- 제안된 법률은 새롭고 다양한 시행령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분야의 발전은 해당된 납세자에 의해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자산 신고 프로그램 (VDP)

DGT 에서 얻은 데이터(예: 정보 교환(EOI), 기관, 정부 기관, 협회, 기타 당사자 등)에 따르면 일부 납세자는 조세 사면 (TA)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자산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RUU HPP 는 이러한 납세자들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자산을 공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VDP 의 도입을 제안한다.

아래에 요약된 두 가지 VDP 계획이 있다:

조항	계획 1	계획 2
참가자 유형	1985 년 1 월 1 일부터 2015 년 12 월 31 일 사이에 취득한 자산을 자산 신고서(Surat Pengungkapan Harta (SPH))에 완전히 공개하지 않은 TA 프로그램 참가자 (개인 및 법인)	2016 년 1 월 1 일부터 2020 년 12 월 31 일 사이에 취득한 순자산을 2020 년 연간 소득세 신고서에 아직 신고하지 않은 특정 개인 납세자
최종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이 인도네시아에 있으며 특정 투자 상품에 투자됨 	6%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이 인도네시아에 있지만 특정 투자 상품에 투자되지 않음 	8%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이 인도네시아 외부에 있지만 인도네시아로 송환되어 특정 투자 상품에 투자됨 	6%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이 인도네시아 외부에 있으며 인도네시아로 송환되지만 특정 투자 상품에 투자되지 않음 	8%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이 인도네시아 외부에 있으며 인도네시아로 송환되지 않음 	11%	18%
특정 투자 상품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 자원 처리 및 재생 에너지 부문; 및/또는 • 국가 증권(예: 국채 및 정부/국가 샤리아 증권). 	
공개 기간	2022 년 1 월 1 일 ~ 6 월 30 일	

조항	계획 1	계획 2
인도네시아 외부에 위치한 자산 송환 마감일	2023 년 9 월 30 일	
투자 마감일	2023 년 9 월 30 일	
최소 투자 보유 기간	5 년	
VDP 에 참여했지만 준수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한 제재	순 자산은 2022 회계연도의 소득으로 처리되며 상황에 따라 3%에서 7.5% 범위의 세율로 (추가) 최종 소득세가 부과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 자산은 2022 회계연도의 소득으로 처리되며 상황에 따라 3%에서 8% 범위의 세율로 (추가) 최종 소득세가 부과된다 • DGT 가 VDP 프로그램에 공개되지 않은 자산을 발견하면 순자산은 2022 회계연도의 소득으로 처리되고 30%의 최종 소득세 더하기 SBA 의 행정적 제재 더하기 최대 24 개월 동안 15%의 증가율을 12 개월로 나눈 가산세가 부과된다.

VDP 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MoF 규정에 의해 규제된다.

의견

VDP 는 납세자에게 이전에 공개되지 않은 자산을 공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세무조사 중에 자산이 발견되었을 때보다 더 관대한 처벌 제도를 제공한다.

규정 시행

RUU HPP 가 발효되면:

- 2022 년 1 월 1 일에서 6 월 30 일 사이에 공개되는 경우 TA 에 관한 2016 년 법률 번호 11 의 시행령은 무효가 됨;
- RUU HPP 와 모순되지 않거나 RUU HPP 에 따라 대체되지 않는 경우 모든 기존 시행령은 유효함;
- UU-2 의 법인세율과 관련된 조항은 2022 회계연도부터 폐지됨.

RUU HPP 의 규정이 공포되면 다음 일정에 따라 발효된다.

- 소득세 규정: 2022 회계연도부터;
- 부가세 규정: 2022 년 4 월 1 일부터
- 탄소세 규정: 2022 년 4 월 1 일부터 석탄 화력 발전소에 IDR 30/kg CO2e 의 관세가 적용됨; 또한
- 기타 규정 : 공포일부터

납세자는 RUU HPP 가 도입할 제안된 변경 사항을 숙지하며 비즈니스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고 필요한 선제 조치를 식별하기 위해 심층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권고한다.

관세 포커스

인도네시아와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국가 간의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관계에 기초한 수입 관세 부과

경제 회복의 가속화를 지원하고 인도네시아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로 구성된 EFTA 국가 간의 포괄적인 경제 협력을 개선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무부 장관을 통해 규정 번호 122/PMK.04/2002(MoF-122)를 발행했으며 이 규정은 인도네시아와 EFTA 국가 간의 무역 협정에 따라 수입 관세 부과 절차를 규제된다.

The Indonesian importers and/or exporters shall have trading leniency with the EFTA countries.

MoF-122 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특혜 관세를 받을 수 있는 당사자

관세구역 외, 보세장치장 (TPB), 보세물류센터 (PLB), 자유무역지역, 특별 경제 구역 (SEZs) 등 관세 지역 내 기타 장소(TLDDP)로 수입 세관 신고를 활용한 수입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원산지 요건:

원산지 기준 ¹	배송 기준 ²
<p>a. 원산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한 회원국에서 전적으로 획득 또는 생산된 물품 (완전 획득/생산); (ii) 한 회원국에서 전적으로 획득 또는 생산(완전 획득/생산)되지 않은 물품이며 사용된 비원산지 상품이 회원국에서 가공을 거쳐 PSR(품목별 원산지 기준) 목록에 포함된 경우; 또는 (iii) 하나 이상의 회원국에서 생산된 재료만을 사용하여 회원국에서 생산되는 상품 (독점적인 생산) <p>b. 특히 리히텐슈타인에서 원산지 상품에 대해 해당상품은 리히텐슈타인 및 스위스에서 출고하는 것으로 간주된다.</p>	<p>a. 배송 기준은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인도네시아와 EFTA 국가 간의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을 위한 상품 원산지 신고(DAB IE-CEPA)를 체결한 회원국에서 관세 지역으로 직접 배송된 수입 상품 (ii) 수출회원국 및 수입회원국 이외 다른 회원국을 통해 배송되는 수입 상품 (iii) 회원국 이외의 국가를 통해 배송되는 수입 상품 <p>b. 수입상품의 배송이 수송 또는 환적의 경우 다음의 조건에 의하여 배송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지리적인 이유; (ii) 경유지 국가에서 거래되거나 소비되지 않음;

¹ The criteria of goods to be exported/imported.

² The shipment process of goods criteria.

원산지 기준 ¹	배송 기준 ²
	(iii) 생산 과정을 거치지 않음; 또한 (iv) 여전히 세관 당국의 감독을 받고 있음 환적 활동에서 수입자는 선하증권을 세관 및 소비세 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절차적 조항이 있다. 즉, 수입자는 다음 조건에 따라 DAB IE-CEPA 를 준비해야 한다:

- a. 회원국의 영역에 주소를 둔 수출업자가 준비함;
- b. 영어로 준비되어 있음;
- c. 청구서 또는 기타 상업 문서로 작성됨;
- d. 규정된 형식과 일치하는 서면 표시/스탬프가 있는 수출자의 신고서가 포함됨;
- e. 상품에 대한 명확하고 상세한 설명, 수출자의 서명 및 이름, 인증번호, DAB IE-CEPA 준비 장소 및 날짜가 포함됨;
- f. 일회성 수입만 사용됨
- g. 작성일로부터 12 개월간 유효함

DAB IE-CEPA 는 선적일 또는 수출일 전후에 만들 수 있다.

3. 특혜관세의 제출·검토·부과

- a. 특혜 관세를 받기 위해 수입자는 상품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i) 원본 DAB IE-CEPA 문서 또는 DAB IE-CEPA 의 인쇄물을 제출함
 - (ii) 물품 수입신고서에 시설코드를 정확히 기재함; 또한
 - (iii) 상품 수입 신고서에 청구서 또는 기타 상업 문서에 수출자의 인증번호 또는 참조번호 및 DAB IE-CEPA 작성 날짜를 기재함
- b. 세관 및 소비세 담당관의 검토 결과 상품 원산지 규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DAB IE-CEPA 가 거부되고 수입 상품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수입 관세율이 적용된다 (최혜국 / MFN).
- c. DAB IE-CEPA 가 여러 유형의 상품으로 구성된 경우 한 유형의 상품을 거부한다고 해서 상품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다른 유형의 상품에 대한 특혜 관세 부과가 취소되지 않다.
- d. DAB IE-CEPA 는 다음과 같은 사소한 차이점이 있는 경우에도 유효한다:
 - (i) DAB IE-CEPA 의 오타 또는 철자 오류
 - (ii) 측정 단위의 차이; 및
 - (iii) 상품 설명을 작성하는 중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4. 기타 규정

- a. 본선인도가격이 USD 200 를 초과하지 않고 회원국에서 출고하는 수입
상품은 수입이 다음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DAB IE-CEPA 를 첨부하지 않고
PIB 문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혜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
 - (i) DAB IE-CEPA 제출 의무를 피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수입품이 아님;
또한
 - (ii) 상품이 수출 회원국에서 생산되었음을 설명하는 수출자의 신고서에
의해 입증됨
- b. 다른 회원국에서 전시용으로 인도되어 전시회 또는 그 이후에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사용되는 DAB IE-CEPA 는 전시회
이름과 전시회 주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 c. 불가항력의 경우 재무부 장관은 특혜 관세 부과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5. 경과규정

MoF-122 가 발효되기 전에 세관 신고가 등록 번호와 날짜를 획득했고 TPB, PLB,
자유 지역 또는 SEZ 에서 TLDDP 로 반출되지 않은 수입 상품은 원본 DAB IE-CEPA
문서는 이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4 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특혜 관세가 주어질
수 있다.

MoF-122 는 2021 년 10 월 13 일부터 발효되었다.

Contact Persons

Questions concerning any of the subjects or issues contained in this newsletter should be directed to your usual contact in our firm, or any of the following individuals:

Business Tax

Melisa Himawan

Tax & Legal Leader

mehimawan@deloitte.com

Business Tax and M&A

John Lauwrenz

jlauwrenz@deloitte.com

Transfer Pricing

Roy David Kiantiong

rkiantiong@deloitte.com

Business Tax

Ali Mardi Djohardi

alimardi@deloitte.com

Business Tax and Business Process Solutions

Ratna Lie

ratnalie@deloitte.com

Transfer Pricing

Balim

bbalim@deloitte.com

Business Tax and International Tax

Cindy Sukiman

csukiman@deloitte.com

Business Tax, Business Process Solutions and Gi3

Roy Sidharta Tedja

roytedja@deloitte.com

Transfer Pricing

Shivaji Das

shivdas@deloitte.com

Business Tax

Dionisius Damijanto

ddamijanto@deloitte.com

Business Tax, Indirect Tax and Global Trade Advisory (Customs)

Turmanto

tturmanto@deloitte.com

Global Employer Services and Business Process Solutions

Irene Atmawijaya

iatmawijaya@deloitte.com

Business Tax

Heru Supriyanto

hsupriyanto@deloitte.com

Business Tax and Tax Management Consulting

Yan Hardyana

yhardyana@deloitte.com

Global Employer Services

Sri Juliarti Hariani

shariani@deloitte.com

Business Tax

Reggy Widodo

rwidodo@deloitte.com

Transfer Pricing

Sandra Suhenda

ssuhenda@deloitte.com

Deloitte Touche Solutions

The Plaza Office Tower, 32nd Floor

Jl. M.H. Thamrin Kav 28-30

Jakarta 10350, Indonesia

Tel: +62 21 5081 8000

Fax: +62 21 2992 8303

Email: iddttl@deloitte.com

www.deloitte.com/id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Indonesia

In Indonesia, services are provided by Deloitte Touche Solutions.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